

경기도 공고 제2026 – 6019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집행정지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6-5896(2026. 8. 5.)호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, 그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1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집행정지 내용	
			기 한	사 유
도일종합 건설(주) (송은경)	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394번길 16, 106호 (신천동)	건축공사업 (10-4205)	수원지방법원 2026구단1472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	수원지방법원 결정 (2026아1950 집행정지) (2026.8.28.)